

생활쓰레기수집운반위탁동의(안)

의안 번호	5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1999. 6. 12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위탁사유

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및 응모자격 기준 마련.
- 경영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수 있도록함.
- 수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력과기구, 재정적인 부담능력, 시설과장비, 책임능력,인력승계등을 심사하여 건실한 업체가 입찰자격을 부여하도록함.
- 기존사용하고 있는 장비승계와 인력을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 하도록 하여 기존인력 생계보장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(사무의 위임)
- 폐기물관리법 제13조(생활폐기물의 처리등)
- 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7조(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)
- 민간위탁 대상사무 조사검토 보고서 위탁결정: '99. 3. 19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(안)

지방자치법 제95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의거 동의한다

□법적근거

○ 폐기물관리법 제13조 (생활폐기물의 처리등)

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.

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법제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있다.

○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7조(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)

①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있어 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※<개정법: '99.2.8공포, '99.8.8일시행>

○ 폐기물관리법 제13조(생활폐기물의 처리등)

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법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한다.

○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제6조의2(생활 폐기물의 처리대행자)

법 제13조제2항에서 “대통령이 정하는 자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.

1. 법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.
5.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자.

□ 청소업무 기본 현황

1) 쓰레기 발생량(1일)

총발생량	매 럽	소 각	음식물퇴비화	재 활용
26	20	2	1	3

2) 청소차량 및 수거인원

구 분	청소 차량	인 원			비 고
		계	운전기사	환경미화원	
계	4	10	4	6	
환경녹지과	2	4	2	2	
고 성 읍	2	6	2	4	

3) 청소차량 쓰레기 수거 거리

o 1일수거거리: 290Km(4대) → 1일약70Km(1대)

4) 쓰레기 배출지점 현황

o 총252개소 (1호차 64개소, 2호차 86개소, 3호차 55개소, 4호차 47개소)

o 차량별 배출지점 현황: 별첨

□ '99청소관련 예산

o 세입 내역

항 목	금 액(천원)	비 고
계	199,992	
쓰레기 봉투 판매수입	180,000	
기 타 수 입	소 계	19,992
	기타폐기물 수수료	13,992
	폐기물관리위반과태료	6,000

○ 세출 내역

항 목		금액(천원)	비 고
계		261,066	
인 건 비	소 계	198,087	
	운 전 기 사	88,407	운전기사4명(환경녹지과2,고성읍2)
	환 경 미 화 원	109,680	환경미화원6명(환경녹지과2,고성읍4)
일 반 운 영 비	소 계	59,697	
	차 량 유 지 비	31,436	차량4대(환경녹지과2,고성읍2)
	피 복 비	540	환경미화원6명(환경녹지과2,고성읍4)
	산 재 보 험 료	27,421	환경미화원6명(환경녹지과2,고성읍4)
	청 소 도 구	300	
공 공 요 금 및 제 세	소 계	3,282	
	차 량 보 험 료	2,978	차량4대(환경녹지과2,고성읍2)
	환 경 개 선 부 담 금	304	차량4대(환경녹지과2,고성읍2)

□ 경영수지 분석

1) 경영 수지

(단위: 천원)

'99세출(A)	가업체 건적 금액(B)	나업체 건적 금액(C)	비 율	
			A/B	A/C
261,066	386,627	186,648	48	△29

2) 업체별 비교분석

- 최저가격 업체선정시 경영수지 악화로 청소상태 부실우려
- 업체 요구금액 지급시 경영수지 적자
- 위탁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원가계산 산정용역

□ 위탁 방향

1) 수탁업체 선정

○ 절차

- 응모자격 기준마련→모집공고→공개모집→수탁위원회심사→공개입찰

○ 응모 자격

- 법령과 조례상 수탁가능한 법인 및 단체
- 인력과 기구, 재정적인 부담능력, 시설장비등 허가조건이 적정한자

○ 모집 공고 및 접수

- 쓰레기 수거 위탁 모집공고
- 경영능력이 있는 민간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문호개방
- 신청서 접수시 영업활동사항, 사업계획서, 수지계산서등 첨부

○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

- 심사기준: 수탁신청기관의 인력과기구, 재정적인부담능력, 시설과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인력승계, 사무소의 지역내소재 여부등을 수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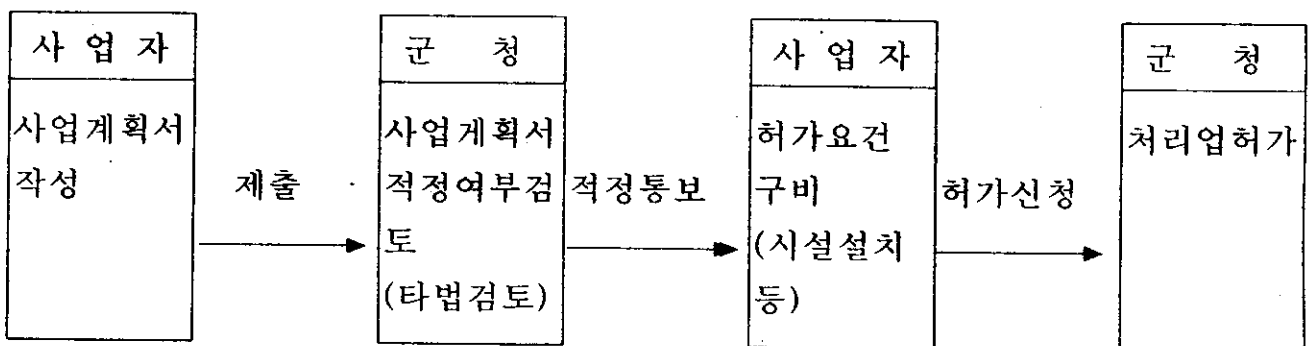
※현재쓰레기 수거 인력 및 시설장비 승계시 최우선 상향배점

□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기준

1) 법적 근거

○ 폐기물 관리법 제26조(폐기물처리업) 동시행규칙 제17조(폐기물처리업의 허가)

2) 업무처리 절차



3) 제출 서류

-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계획서
- 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서
- 기술능력 확보 계획서

4) 서류검토 사항

-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
- 수집 운반업 허가요건 충족여부
-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
- 타법 저촉여부

5)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장비 자본금기준

-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
 -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이상,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 1억원이상
 - ※개정법은 자본금은 제외
- 장 비
 - 밀폐식 운반용차량 1대이상으로 적재능력 합계가 15세제곱미터 이상
 -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이상

6) 허가신청서 제출

-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 허가신청

□ 향후 추진 계획

1) 위탁 추진일정

일 자	추진항목
'99. 5	위탁 추진계획 수립
'99. 6	위탁 용역비 확보(1차추경)
'99. 6	수집 운반비 원가계산산정 용역의뢰
'99. 7	원가계산서 검토 및 사업신청자 모집
'99. 8	사업계획서 검토 및 수탁위원회 업체심의.공개입찰
'99. 9~12	민간위탁 시행

2) 수집 운반 원가계산 산정

- 위탁비용산정의 공정성,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진단을 겸한 원가계산산정 용역
 - 용역범위: 원가계산의 개요, 원가계산의 기준, 향후5년간 추정원가
 - 원가계산 용역기관: 용역기관으로 등록된 업체(연구소)
- 소요 예산
 - 원가계산 용역비: 원가계산 용역에 필요한 경비
 - 위탁비용: 위탁비용 산정결과와 입찰금액에 대한 군비보조 금액
- 예산 요구
 - 원가계산 용역비: '99. 1회추경 예산편성
 - 위탁 비용: '99. 2회 추경 예산편성

3) 민간위탁 추진계획 승인

-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보고: 군의회 승인

4) 사업자 선정

- 수탁위원회구성(10명): 부군수, 기획감사실장, 행정과장, 민원봉사과장, 지역협력과장, 세무회계과장, 환경녹지과장, 군의회의원2명.
- 수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의 및 입찰대상자 선정(총점70점이상자)

5) 위·수탁 협약체결

- 수탁자의 의무 위·수탁내용 기간등 명시
- 연간비용 지급단가 결정 및 비용청구 지출방법(월별 및 분기별지급)
- 위탁기간의 설정: 최초 협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매2년마다 협약내용을 협의 조정함
-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
 -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
 -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정지 및 시정조치
 - 년1회이상의 일반감사

○ 위탁축진을 위한 수탁기관의 고용승계

- 재취업알선 대책마련
- 승계되는 인력의 일정기간 신분보장: 2년이상

○ 계약보증금 납부

- 수집·운반·처리를 미이행 하거나 부실처리에 대하여 행정에서대집행
- 계약보증금은 연간 관리비 기준으로 연간20% 금액납부.

6) 사무 인계 인수

- 위탁기관 완료 및 해제시 발생할 책임전가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계 인수서 2부를 작성 각1부씩 보관
- 위탁업무의 사후관리
 - 행정지도 감독부서 및 담당자 지정: 환경녹지과 지태찬

7) 인원조정 및 차량매각

- 인원조정 10명(운전기사4명, 환경미화원 6명)
 - 운전기사 및 환경미화원 위탁업체에 최대한 고용승계,미고용 인력 인사부서에서 조정
- 차량매각 4대
 - 위탁업체에서 차량인수 토록 감정후 매각

8) 고 시

- 지방자치법 제141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고성군 공보지게재
- 소가야 소식지에 게재 전군민에게 홍보
- 읍면 공문시달 행정지도

생활쓰레기수집운반위탁수정동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3

제 출 자 : 산업건설위원회

1. 수정사유

- 0 향후 추진계획 4)의 사업자 선정의 내용중“ 및 입찰대상자 선정 (총점 70점이상자)” 의 규정은 심의의 공정을 기할수 없음.

2. 주요골자

- 0 향후 추진계획 4)의 사업자 선정의 내용중“ 및 입찰대상자 선정 (총점 70점이상자)” 를 삭제

3. 본문 : 붙임과 같음

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수정동의(안)

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향후 추진계획 4)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0 수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의 및 입찰대상자 선정(총점 70점이상자) 내용중 “ 및 입찰대상자 선정(총점 70점이상자)” 를 삭제한다.